

●해양수산부령 제808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6년 07월 13일

해양수산부장관 인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라목의 세부 내용란에 3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)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는 경우 안전조종

별표 5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수상안전교육의 과목·내용 및 시간

과목	내용	교육시간	
		신규 면허 시험 응시	면허증의 갱신
가. 수상안전 에 관한 법령	1) 「수상레저안전법」, 「수상레저기구의 등 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」, 「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해사안전기본 법」, 「해상교통안전법」, 「해양환경관리 법」 등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에 규정된 안전 의무 및 금지 사항 2) 법령 위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및 행 정처분 사례 등	30분	20분
나. 수상레저 기구의 사 용과 관리	1) 수상레저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2) 수상레저활동 전·후의 점검사항 3)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 요령 4) 자주 발생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	50분	40분
다. 수상레저 기구 간 연결 시 수상레저 활동 실무	1) 조종자 및 탑승객 주의사항 2)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3) 표준 수신호의 종류 및 사용 방법 4)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연결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동력수 상레저기구별 주행 방법	20분	20분
라. 수상안전 상식	1) 해양 위험 기상(강풍, 풍랑, 태풍 등 수상 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기상현상)의 종류와 대처 방법	40분	20분

	2) 수상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(휴대전화 충전상태 확인,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 착용방법, 수상레저활동 전 기상상태 확인 방법 등)		
마. 수상구조	1) 구명장비의 사용법 2) 조난이 발생하거나 물에 빠진 경우의 생존 요령 3) 응급처치 방법, 인공호흡 방법 및 심폐소생술 4) 위급상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5) 익수자(溺水者) 구조 방법	40분	20분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하는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세부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상안전교육이 진행 중인 경우의 교육 과목·내용 및 시간에 관하여는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◇주요내용

최근 동력수상레저기구*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**를 연결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는 사람 및 면허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수상안전교육 등의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에 무동력수상레저기구가 연결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조종 방법, 장비 사용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.

* 수상오토바이, 모터보트, 세일링요트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는 수상레저기구

** 수상스키, 파라세일, 카약 등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수상레저기구

<해양경찰청 제공>